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활용 안내

1. 우리부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제도를 신설·운영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고용안정 협약지원금」은 노사가 합의하여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임금감소가 발생한 기간에 대하여 임금 감소분의 50% 범위(1인당 월 50만원 한도, 기업별 총 20억 한도)내에서 지원하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장도 지원이 가능하고,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도관련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홍보리플렛, 활용사례, 안내문 등 참고

3. 귀 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동 지원금 제도를 활용하여 고용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시기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노사협력정책과 (044-202-7593, 박미진 주무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제도소개 및 유사업종 지원사례 1부.
2.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리플렛 1부.
3. 고용안정 협약 지원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관련 홍보자료 1부. 끝.

고용노동부장관

수신자 한국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 중소조선공업협동조합



주무관 박미진 행정사무관 김영남 과장 전결 2020. 9. 28. 조오현

협조자

시행 노사협력정책과-3955 (2020. 9. 28.) 접수

우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6층 / www.moel.go.kr

전화번호 044-202-7593 팩스번호 044-202-8075 / july00@korea.kr / 대국민 공개